

윤리/준법경영 가이드 북

2010. 12



한국석유공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목 차

I. 행동강령 및 추진전략	1
1. 행동강령	3
2. 윤리경영 추진전략	17
II. 윤리경영 제도 및 절차	23
1.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25
2. 공익신고 제도	26
3. 외부강의 신고 절차	28
4. 선물반환 절차	31
III. 윤리경영 사례 등	33
1. 공사 및 해외 기업의 뇌물 관련 사례	35
2. 선물·뇌물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행 등	37
첨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지침	39
부서별 주요 적용 법령 사항	4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71



행동강령 및 추진전략

행 동 강 령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다른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강령은 공사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과 직원(별정 직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행동강령이행 서약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 【이해충돌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②임직원은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제4조의3 【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4촌 이내의 친족

3. 임직원이 직전에 근무한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공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임직원은 상호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금품 등 제공 금지】 ①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직원은 상호간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해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해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 자 하는 임직원은 사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0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 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 【겸직 등 외부활동의 신고】 ① 다음의 외부강의(강의, 강연, 발표, 토론 및 자문 등 포함)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활동 사항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겸직허가대상 외부강의 등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0조의2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허가신청서 내 허가사항을 신고

2.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 :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사항을 신고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외부강의 등을 하는 자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⑤윤리경영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15호 서식 외부강의 신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한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6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임직원은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등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임직원은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도박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27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보 칙

제29조 【교육】 ①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과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은 신규 임용 시 실시하되, 그 교육시기는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서면·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

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단, 외부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은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서면·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외교상 결폐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행동강령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6호 서식 수령 금품 미반환 사유서를 행동강령책임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은 당해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기타 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회사 등 기관 포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 담당 부서장과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감사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③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사 담당부서장과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행동강령의 상담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사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상담·신고·접수·처리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징계】 ① 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의2(관계회사의 재취업 제한 등) ① 임원은 퇴직 후 관계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은 관계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부당한 이권개입 등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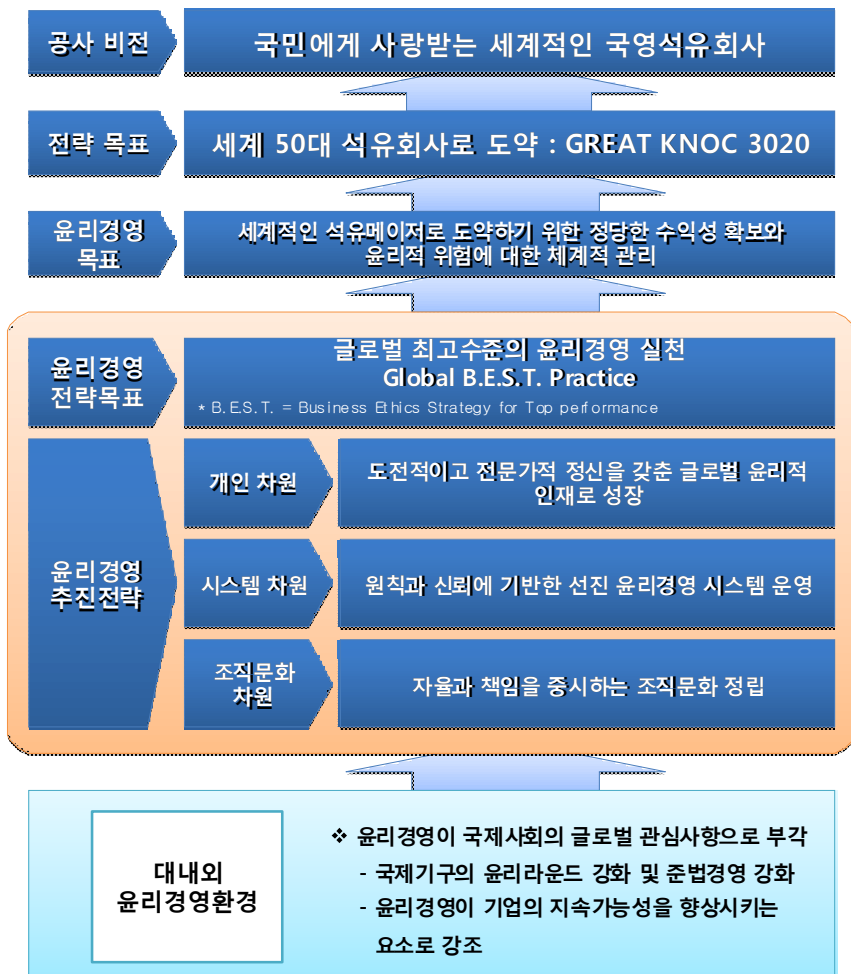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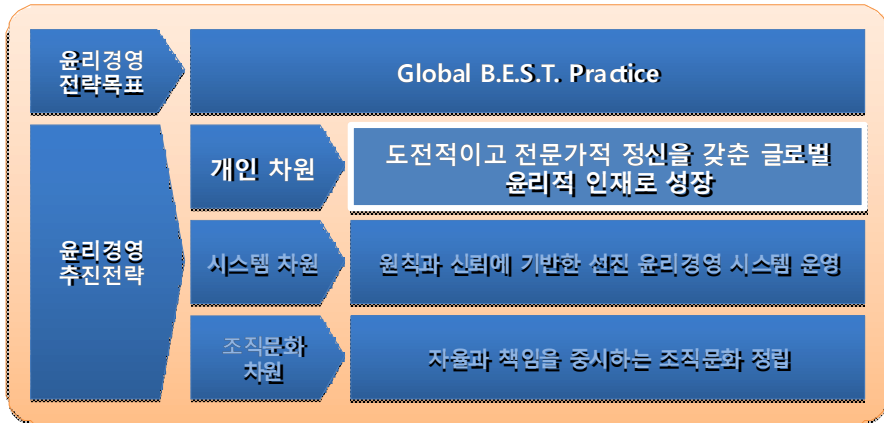
(시행일) 이 강령은 2010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윤리경영 추진전략

공사 윤리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윤리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1/3)



추진 과제	실행 방안
1. 윤리적 인재상 정립 및 인재육성	•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해외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 공사 윤리/행동강령 내 윤리적 인재상 반영 • 해외 파견 대상 임직원에게 대한 현지 인문·문화 사전 교육 실시
2. 체계적인 윤리교육 계획 수립	• 계층별 윤리경영 교육 실시 • 해외지사에게 대한 정기적 윤리경영 순회 교육 확대 실시
3. 의식과 태도변화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선진기업 교육 콘텐츠 벤치마킹 및 개발 • 국내 및 해외 업무현장 관리자에 의한 책임제 교육 실시
4. 윤리/행동강령의 체질화	• 해외 윤리경영 실태조사 실시 • 해외 진출 국가별 행동강령 제작·배포 • 윤리/행동강령 정독 및 윤리경영실천 전자 서약 시행
5. 교육효과와 실천에 대한 주기적 평가	• 정기적인 교육효과 분석 및 평가 실시
6. 평가와 보상의 연계	• 윤리경영 실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 • 윤리경영 실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윤리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2/3)



추진 과제	실행 방안
7. 전략적인 제도 구축 추진계획 수립	• 제도 구축계획의 목표달성 및 진행 상황 관리 • 제도 추진계획의 효과 검토와 변경
8. 윤리경영전담조직 구성 및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업무분장 • 책임자 임명, 적정 수의 윤리경영 담당자 확보 • 해외 거점별 윤리담당자 지정 운영
9. 윤리경영 담당자 의지 및 업무전문성 강화	• 외부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교육 참가 활성화 • 윤리경영 학습조직 활성화
10. 윤리경영 제도 운영 실태 및 성과 측정	• 공사 윤리경영 평가지수의 주기적 측정 및 결과 피드백 • 정부 윤리경영실태조사(KoBEX SM) 지속대응
11.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	• 해외지사에 대한 윤리경영 Peer Review 실시 • 국내외 현장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적극 수렴
12.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및 운영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 대응 연구 TFT 운영 • 전사적 ERM 구축과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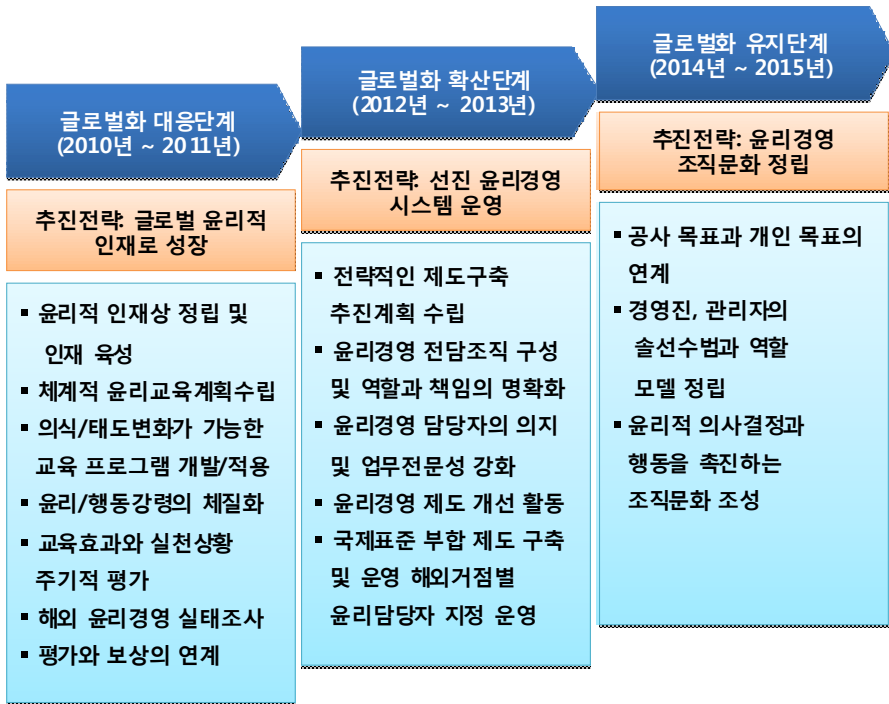
윤리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3/3)



추진 과제	실행 방안
13. 공사목표와 개인목표의 연계	- 공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역량 개발 및 개인 목표 설정 유도 - 윤리경영 브랜드 및 캐릭터 사내공모 대회 개최(우수자 포상)
14. 경영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역할모델 정립	- CEO 윤리경영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경영층 윤리경영 e-메시지 발송 - 경영진을 위한 윤리/행동강령 제정
15.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촉진하는 조직문화 조성	- 윤리경영 뉴스레터 발간 - 부패 및 비위부조리, 윤리/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협력마당 설치(협력업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

윤리경영 중장기 추진방향

- 윤리경영 추진 체계에 반영된 '글로벌 윤리적 인재 양성', '선진 윤리경영시스템 운영',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립'에 주력하는 윤리경영 추진전략을 토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 윤리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설정





윤리경영 제도 및 절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 One Strike - Out 제도의 개념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비리직원을 즉각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

○ 적용근거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징계양정의 기준)

<금품·향응수수 관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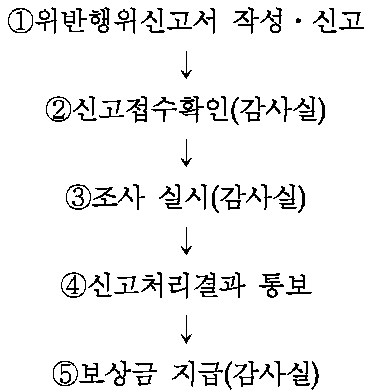
금 액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비위수수 유형행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견 책	감 봉	정 직	파 면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감 봉	정 직	파 면	파 면
	능 동	감 봉정 직	정 직	파 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 봉정 직	정 직파 면	파 면	
	능 동	정 직	파 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 직파 면	파 면		
	능 동	파 면	파 면		

공익신고 제도

□ 내부공익신고

- 타인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신고 대상
 - 업무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직위이용 부당이득/사손,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저해(알선, 청탁 등), 기타 윤리/행동강령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신고 절차>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유 형		보상금 지급액
금액산출이 가능한 건	수수금액 또는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	○ 수수금액 또는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의 10배(최고 20억원)
금액산출이 불가능한 건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 경고 100만원 ○ 견책 500만원 ○ 감봉 1,000만원 ○ 정직 3,000만원 ○ 파면 5,000만원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신고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 내용				
증거 서류				
비고				

※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의 윤리경영 핫라인 등을 통해 감사실로 제출

□ 자율공익신고

- 자신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클린(자율)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유형	보상금 지급액
현금, 상품권 등 금품 수수금액 정도에 따라 지급	○ 신고 시 상품권(3만원 상당) 지급 * 신고금액이 100만원 이상 시 보상심의를 통해 최대 1,000만원 까지 추가지급 가능

- ※ 클린신고는 금품 수수한 본인이 금품 수수 후 24시간 이내 신고 시 지급
- ※ 신고절차는 선물반환절차 참조

외부강의 신고절차

□ 신고 대상

-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자문 등 모든 외부 활동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함(**행동강령 제24조**)

단, 외부강의 중 **시간강사·겸임교수 위촉, 1월 초과하여 지속적 출강**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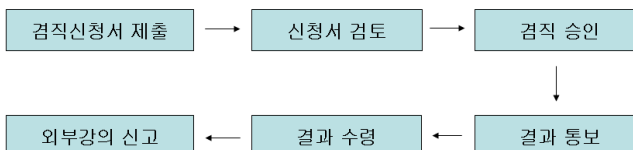
이 경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0조의2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후, 별도로 허가사항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 신고 절차

1) 겸직허가 대상인 경우

- ❶ 겸직허가 승인(인사규정 시행세칙 20조의2, 20조의3)
 -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22의 겸직신청서를 작성 후 인사부서에 제출
- ❷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 겸직허가 문서 및 외부강의 신고서(강의요청 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반드시 **문서 통보**

<프로세스>



2)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일회성 강의, 강연, 자문 등의 경우

㉠ 부서장의 허가(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3)

- 외부강의 신고서(강의요청 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처실장은 소속 상임이사의 허가)
- 소속부서장은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강 허가
- 강의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출장, 외출, 휴가 등 복무관리 철저
* 외부강의 등으로 교통비 등 출장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출장비에서 해당항목 제외 또는 사후정산(이중 수령 금지)

㉡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 윤리경영 담당부서 신고는 별도 문서통보 없이 **부서장의 허가 시 법무팀 부서 협조로** 같음

< 부서 협조 시 결재선 지정 >

- 외부강의 신고자가 처실장인 경우
 - 결재선 : 처실장 → 법무팀 부서협조 → 소속 상임이사
- 외부강의 신고자가 팀장이하 직원인 경우
 - 결재선 : …… → 팀장 → 법무팀 부서협조 → 처실장

□ 기타

- 외부강의 요청문서에는 강의일시·시간·장소 및 **강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직급 등)**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요청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신고사항						
☐ 교육과정(강의) ☐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심포지엄 ☐ 기타						
1.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2. 요청사유				3. 장소		
4. 일시				5. 대가		
※ 연도 중 외부강의 등 과거실적 / 향후계획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월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고		
20 . . . 신고자 (서명)						

선물반환 절차

□ 금품수수의 금지

- 공사 직원은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금품제공을 받을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반환 등 조치

□ 금품 수령 시 행동요령

① 즉시 거절이 가능한 경우

- 공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취지를 설명 후 정중히 거절
ex) “공사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등

② 우편(택배) 등을 통해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

-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문서화하고 자진신고서를 작성한 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서 제출
- 윤리경영에 따른 반환사유 등을 동봉하여 선물제공자에게 반송

③ 반환처리가 곤란한 경우(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부패·변질의 위험이 높거나, 외교상 결례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문서화하고 자진신고서를 작성한 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서 제출 및 금품 전달

자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 내용	금품제공자, 제공금품 내용, 금품처리 내용 및 공개된 상황에서 처리여부 등 기재			
증거 서류	금품사진, 영수증 등			
200 . . . 신고자 (서명)				



윤리경영 사례 등

공사 및 해외 기업의 뇌물 관련 사례

□ 해외기업의 뇌물 관련 대응 사례

1) 로알더치셀그룹 대응 사례

로알더치셀그룹은 본사의 윤리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1976년 유럽의 A국에서 450만달러의 정치헌금을 강요받자 지사장을 해고한 후 곧바로 철수

이후 14년간 A국에서 사업을 벌이지 않았음

2) 모토롤라의 대응 사례

모토롤라의 현지중역은 회사 전체의 연간 수익률을 25%나 올릴 수 있는 거래 상대방에서 남미국가의 정부관리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거래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본사에 통고했으며 최고경영자는 거래 포기를 수용

아시아의 C국에서는 금품을 요구하면서 공장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자 공장 가동을 연기하면서까지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요구해도 뇌물을 주지 않는 회사로 소문나면서 부당한 요구가 계속 감소

3) IBM의 대응 사례

IBM아르헨티나는 1994년 아르헨티나의 주요 은행중 하나인 '방코드라 나 시옹'으로부터 2억 5000만달러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및 은행임원 등을 포함하여 약 2,10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1997년에는 멕시코 경찰청의 전산 현대화작업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통한 수의계약 사실이 폭로되자 IBM은 3,75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컴퓨터를 기부하고 사건을 마무리

□ 공사의 선물반환 사례

1) 추석 선물 반송

‘○○○○협회’는 공사 국내지사의 정기 건강검진 의뢰기관 중 한 곳으로 A지사 경비실로 멸치(1kg) 2박스가 택배 배달되었으며, 수신처가 건강검진 계약부서였던 업무관리팀으로 보아 추석 선물로 판단

윤리경영 행동강령 제3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의거 택배 회사를 통해 즉시 반환하려 하였으나 추석이 임박하여 택배접수가 곤란하고 상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어, 업체 관련자를 업무관리팀으로 오게 하여, 업무관리팀장이 감사의사 표명과 더불어 우리 공사의 윤리경영 행동강령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배달된 물품을 되돌려 줌.

윤리경영에 대한 취지 설명, 물품의 전달은 업무관리팀 전 직원 및 유지보수팀원 등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이루어짐.

2) 협력업체 설 상품권 반송

‘주식회사 xxx’는 금년도 공사와 경비용역을 체결한 업체로 동기우편을 통해 3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공사 사무소 업무관리팀으로 보내옴.

동봉된 글의 내용과 상품권 수신처가 경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관리팀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설 명절 선물로 판단됨.

윤리경영 행동강령 제3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의거 인근 우체국을 통해 동기우편으로 즉시 반송함. 아울러 보내온 성의에 대한 감사의사 표시와 우리 공사의 윤리경영 행동강령 취지를 담은 서신을 동봉하였으며 유선상으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피력

선물 · 뇌물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행 등

□ 일본

일본에서는 선물의 한계가 없다.(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5\$ 이상) 예물은 사회적 관행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사회적 관행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사회적 수치는 유죄판결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선물은 너무 과도히 주면 안 되며 지나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연 2회 선물교환시기가 있으므로 선물 준비 시에는 상대방의 가치와 친분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므로 고급스럽게 포장하며 관련인사 모두에게 준비한다.

□ 중국

중국에서는 뇌물을 받으면 “사회적 창피” 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돈과 이익에 철저히 실리적이며 간혹 “중국의 친구”라고 상대측을 부추기며 협상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양보 또는 금액이 관련되었다면 낮은 가격대를 요구하는 압력을 준다. 이럴 때는 그냥 살며시 웃고 넘겨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중국인들은 선물교환을 중요시한다. 선물은 두 손으로 정중히 받도록 하며 절대 포장을 그 자리에서 뜯어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선물을 받기 전에 세 번 정도 거절하므로 계속 받기를 권한다. 축의금 · 선물은 짝수로, 부의금은 홀수의 금액으로 주는 것이 예의이다.

□ 영국

공무원들은 일체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유대나 소속의식보다 업무에서의 공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영국기업의 특성이다. 영국인들은 말을 아끼는 편이기 때문에 직선적인 질문을 할 경우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표정이나 목소리의 억양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으나 또한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칠레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줄곧 법을 존중해야한다는 전통이 사회관습으로 굳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칠레에서는 반부패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관료들은 현금이나 선물을 받지 않는다. 현금을 내밀었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심하면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호의를 표하고 싶을 때는 부부동반 저녁식사 초대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 싱가포르

사회 공중질서가 엄격히 지켜지고 있고 사소한 행위라 할지라도 공중질서를 어기는 행위(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휴지/침/꽃을 쥐는 행위),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예 : 주차권 변조, 입국 시 술, 담배를 소지하고서도 없다고 부인)에 대한 처벌이 중하므로 공중질서와 법질서의 준수의식이 요망된다. 세관, 경찰, 기타 정부민원부서와의 접촉 시 사폐금, 뇌물 등 반대급부의 제공은 절대 금기사항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선물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선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주더라도 과도한 것 보다는 간단한 기념품 등이 바람직하다.

□ 미국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프로젝트의 요점을 정리한 후 협상에 임하여야한다. 자사의 장단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분석해야한다. 경쟁우위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인은 결정이 빠른 상대방을 존경하고 기업가적 상호방식을 좋아한다. 협상에 임할 때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가야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 "Kiss" 원칙 즉, 짧고 단순하게(Keep It Short and Simple) 표현해야한다. 미국에서는 재치와 유머가 실질적인 지적능력을 증명한다. 동시에 상대방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오면 좋아한다. 특히, 선물은 받는 자리에서 바로 풀어보는 것이 예의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윤리경영 규정 제25조제4항 윤리헌장·강령 위반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공익신고”)의 의무·방법·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석유공사 소속 임직원(별정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외부 신고자가 공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 시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보호·보상한다.

제3조(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이라 함은 현금, 상품권 등을 말한다.
2.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외부 신고”라 함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내외 비윤리 행위를 인지한 공사 임직원 및 외부인이 윤리경영 핫라인 등을 통해 공사 임직원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클린신고”라 함은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6. “윤리경영 핫라인”이라 함은 공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에 임직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사이트를 말한다.

제4조(전담 책임자 운영) ①공사 홈페이지, 사내게시판 및 윤리경영 Hot-Line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부 신고사항 처리 : 감사실

2. 클린신고사항 처리 : 윤리경영담당부서

②전담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핫라인,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공익신고사항 처리

2.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사무처리

제5조(신고의무) ①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익신고하는 자는 내부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클린신고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작성하여 윤리경영 핫라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전화, 방문 등 기타 가능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비실명이나 타인의 ID도용 등 신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신고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처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클린신고사항 및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의 신분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3.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감사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신고자 보호) ①직원은 이 지침에 의한 공익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이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 담당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부서는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면 해당 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자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감면)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으나 별표2의 요건에 부합되는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이 지침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물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클린신고 보상금은 공사 임직원이 현금, 상품권 등 실체가 있는 금품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인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되거나 인지된 후 24시간 이내에 자율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12조(지급 대상)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선물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단,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경조금, 선물, 음식물 및 편의 등 제외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 경조금은 5만원 한도, 선물, 음식물 및 편의 등은 3만원 한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회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4. 기타 위 1호 내지 3호를 제외한 공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13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또는 감사원·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비윤리행위에 가담한 자
8.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 심의) ①내·외부신고 전담부서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심의를 청렴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내·외부신고 건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보상 수준
2. 신고된 금품, 향응 등의 규모나 성격이 애매한 경우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
3.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

②클린신고 전담부서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심의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클린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 추가 지급 여부
2. 신고된 금품·향응 등의 규모나 성격이 애매한 경우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
3.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

제16조 <삭제>

제17조(기타 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청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주요 적용 법령 사항

[국내 공통]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비밀누설 금지	-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의무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석유공사법 제 9조, 제19조
공 공 기 록 물 관리	-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국외반출 금지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 또는 중과실로 멸실하거나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계약관리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55조, 56조
계약관리	- 공사의 도급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지체 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26조
계약관리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및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 등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50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조세범처벌법제10조

[기획조정실]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국정감사 출석	-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서류제출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진술 또는 허위감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2조, 제14조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벌칙>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 하향조정 및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 실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경영공시사항 공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포함)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 9.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조치계획 포함) 11. 주무기관의 장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조치계획 포함) 12. 「감사원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조치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13.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시정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 및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2조
장애인 고용의무	- 의무고용율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의2
장애인고용분담금신고	-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조사하여 징수 가능 <가산금>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 제35조
파견근로자관련금지사항	- 균등한 대우 : 파견근로자가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파견기간	-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3조

[경영지원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근로자 고충 해결	-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고충처리기관 설치 신고 - 고충사항처리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 동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벌칙>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 제28조, 제32조
취업규칙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의무 및 변경 시에도 동일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함. 신고 시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됨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6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 제1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마다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과태료> 중소기업청장은 위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6조

[재무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외부 회계감사 실시	-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함 <벌칙>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계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거나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3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대한 규칙 제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6조
계산서 작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가산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 징수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 신고·납부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함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64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가산세>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가산세> 1. 미신고 시 또는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미납부 시 또는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제177조의2
주민세특별징수신고서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함 - 주민세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분을 2년간 보관함 - 특별징수세액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함 <가산세> 미달세액 미납부액의 10/100 가산세	지방세법 제179조의3, 시행령제130조의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세> 미납부액 또는 미달세액의 10/100 가산세	소득세법제128조 시행령 제185조

[PI추진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정보통신망 영관리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금지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비상계획실]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민방위 편성 절차	-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 중 퇴직하거나 당해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편성, 해체, 이전 또는 명의변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벌칙>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39조
직장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제36조
청사 폐기물 처리	-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 제67조
생활폐기물 배출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함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68조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72조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에너지 관리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조치를 추진하여야 함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제10조 및 시행령 제15조
식당관리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2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영양사로부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5.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88조

[아시아생산처, 미주사업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 해외자원개발사업 시행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의무(신고사항 변경 시 포함)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함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제24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 제25조
해외직접투자신고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벌칙>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동해-1 가스전 조광료 납부	- 해저조광권자는 해저 조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조광료를 매분기 종료 후 6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가산금> 조광권자가 위 기간 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율 가산하여 납부 *당해분기의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8조, 시행령 제9조

[리그사업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선원 정원 관리	-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운항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함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선원법 제64조, 제139조, 제148조
의료관리자 승무	- 선박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5천톤 이상 선박에는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두어야 함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선원법 제78조, 제139조, 제148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함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32조제4항
선박안전관리	-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흡수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벌칙>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만재흡수선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8조, 제84조
선박안전관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함 <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12조, 제83조

[생산시설건설단]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건설사업 관련 전 담 법 인 설 립 및 컨소시엄 관 리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신 고사항 변경 시 포함) <벌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외건설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해양 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 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 제39조, 40 조, 41조 해외건설촉진법 제 10조, 제13조, 제 41조
대리시공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해 외건설업자에게 당해 공사를 대리시공하게 할 수 있음 <벌칙> 대리시공 사유로 부실시공을 하여 준공 전 공사 중단 시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자의 경우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해외건설촉진법 제 33조, 제37조, 제 40조

[E&P계획처, 신규사업처, 아시아탐사처, 유럽아프리카사업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 해외자원개발사업 시행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의무(신고사항 변경 시 포함)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함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 제25조
해외직접투자신고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벌칙>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아시아탐사처, 유럽아프리카사업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국내 탐사권 설정	- 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함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탐사권 허가사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의무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제36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7조, 제38조
해저조광권 권리	- 탐사권자가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 3월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함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4조, 제35조
해저조광권 권리	- 해저조광권자는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6조, 제38조
석유의 채굴	-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광업법 제4조, 제8조, 제101조, 제103조
채광계획 인가	- 광업권자는 채광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채광계획서 변경 시 포함)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광업법 제42조, 제102조, 제103조

[석유비축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석유비축의무	- 석유비축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함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7조, 제45조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벌칙> 안전점검의 미실시 등에 따라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가하여 공중에 위험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9조
송유관안전관리자 선임	- 송유관설치자들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 후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7조, 제14조, 제16조
항만보안관리	- 항만시설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함 -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 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항만시설에 위치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 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 발생 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과태료> 위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 제52조

[석유사업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비축원유 대여 기준 등 승인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1.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 및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증설 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의2
종합보세사업관련 신고의무	-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 시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의무(신고사항 변경 시 포함) <벌칙>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과태료> 변경사항 미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 의무 <과태료>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198조, 제276조, 제277조, 제279조 관세법 제199조, 제277조
물품 수출·수입 시 신고의무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벌칙>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부과 -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 의무 <가산세>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 징수	관세법 제241조제1항, 제276조, 제279조 관세법 제241조제3항, 제4항

[비축시설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산업단지 내 건축 등 허가	-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사항 변경 시 포함) <벌칙>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2조, 제51조, 제52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 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함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6조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	-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항만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 제129조, 제130조
배출시설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중요사항 변경 시 포함) <벌칙> 무허가 설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벌칙> 미신고 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과태료> 변경신고 미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5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관리	-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시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완공 후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벌칙> 안전성 확인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완성검사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50조, 제48조

[기술계확실]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전문연구요원관리	-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2.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4.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5.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6.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칙>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행위자 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역법 제40조, 제84조, 제96조
전문연구요원관리	-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병역법시행령 제75조

[석유탐사실, 석유공학실]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기술개발사업관련 비밀누설 금지	-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업 등의 직원 등은 기술개발사업과 관하여 업무상 취득한 기술개발기업의 비밀 등을 별도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이전에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음 <출연금 환수 등>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46조, 제43조
연구윤리지침관리	- 연구기관은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부정행위의 범위·신고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규정 마련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종료 시 연구지원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 제21조

[시추운영단]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시추기자재 통 관 시 면세신청	- 해저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함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재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혹은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 위에 따른 조세면제는 조세면제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제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시행령 제133조의2
시추용 화약 등 관리	- 총포·화약류는 제조업자·판매업자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수출·수입 시 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중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제70조, 제76조
시추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 시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다만,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후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중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71조, 제76조, 시행령 제15조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시추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광물 채굴자는 1,125그램 이하의 화약류는 허가 없이 양수 가능)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 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71조, 제76조, 시행령 제25조
시추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저장소를 설치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설치장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사항 변경시 포함) - 시추작업에 사용되는 화약은 화공품으로 분류되며 화공품은 3급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지상에 설치하는 3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저장소의 벽(앞면의 벽을 제외한다)은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으로 하고, 앞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폭발한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로 할 것 3.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4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으로 할 것 4. 출입구는 부근의 보안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는 쪽에 설치하고, 저장소의 바깥에는 포말 소화기 등의 소화시설을 갖추어 할 것 5.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 또는 간이흙둑을 설치할 것 -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줄 수 없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 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제72조, 제76조, 시행령 제 28조, 시행규칙 제35조
시추용 화약 등	- 화약류 운반 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총 포·도검·화약류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관리	하며,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등 단속법 제26조, 제73조, 제76조
시추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 저장소 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임기준에 따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해임 시 포함)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 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제73조, 제76조, 시행령 제55조
시추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 폐기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하며,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과염소산염 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테르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2.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 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 처리할 것 3.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 처리할 것 4.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서서 분해 처리할 것 5. 도폭선은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 처리할 것 <벌칙> 기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과태료>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총 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시행령 제24조

[석유정보센터]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저작물 보호	-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 보호	-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그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이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음 - 도서관등은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음 -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 및 침해에 따른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음 <벌칙>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처리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저작권법 제5조 저작권법 제31조 저작권법 제123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39조, 제141조

[가스전관리사무소]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 오염물질이 항만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1.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받는 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류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되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협조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132조
	-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비치·보관하여야 함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제129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함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제128조
	<방제분담금> 방제선등 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비축지사]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입출항 선박 관리	-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 위험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입항 전에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 의무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개항질서법 제5조, 제46조, 제47조 개항질서법 제20조, 제48조 개항질서법 제22조, 제45조, 제47조 개항질서법 제23조, 제44조, 제47조
항만보안관리	- 항만시설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함 -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항만시설에 위치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 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 발생 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과태료> 위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23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25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30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32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53조

[건설출장소]

준법사항	내 용	관련법규
건설폐기물 신고	- 건설폐기물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신고사항 변경 시 포함)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4조
건설용 화약 등 관리	-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 시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제70조, 제76조
건설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시행령 제25조, 제71조, 제76조
건설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저장소를 설치 시 설치장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사항 변경 시 포함)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제72조, 제76조
건설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 운반 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 제73조, 제76조
건설용 화약 등 관리	- 화약류 폐기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하며,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벌칙> 기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종업원 이외에 법인도 벌금형 과형 <과태료>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0조, 제73조, 제76조, 제74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음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법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법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